

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규정과 향후 대응방안*

백경희**, 심영주***

사회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유해물질인 주류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의 신경학적,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외부에 발현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험은 결국 사회적, 경제적 위험으로 귀착된다. 그리고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를 마신 뒤 무면허음주운전 혹은 음주운전을 행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여 그 피해 또한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의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가 음주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그 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음주의 경우에는 만 21세에 이르기까지 금주하는 주가 상당하며, 음주가 금지된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여 음주를 금지하는 연령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음주가 금지된 청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음주가 금지된 청소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음주운전,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법적 책임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khbaek@inha.ac.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교수(yjshim@inha.ac.kr)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및 음주운전 현황
 - 1.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
 -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 III.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와 판례의 태도
 - 1. 현행법상 규정
 -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운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3. 검토
- IV. 외국 사례 검토 - 미국을 중심으로
 - 1. 규제 배경
 - 2. 청소년 음주율 감소를 위한 제도 정비
 - 3. 검토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V.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음주를 사위의 방법으로 시도하려는 청소년 관련 문제점
 - 2. 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제재의 필요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¹⁾ 한편,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의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

1) 청소년보호법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호), 민법의 미성년자의 범위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음주'로 일괄적으로 통칭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2)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자가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만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가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된다.

청소년이 음주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그 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 행위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된 특약에 가입된 경우 청소년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이 아닌 일반법인 민법상 책임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군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었고, 이에 대법원은 소위 ‘음주운전 3진 아웃제’와 관련하여 두 번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았고,³⁾ 특히 청소년 음주운전으로 과거 단속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 역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⁴⁾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하여 연일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악물에 해당하는 주류를 마신 뒤 무면허음주운전 혹은 음주운전을 행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⁵⁾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음주의 경우에는 만 21세에 이르기까지 금주하는 주(州)가 많으며, 음주가 금지된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작금에 벌어진 다양한 사건에 비추어 청소년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는 연령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음주가 금지된 청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음주가 금지된 청소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 및 이 때 감독자의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동판결에서 대법원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5) 중앙일보, “10대 청소년 교통사고 2년새 20% 증가… ‘48명 숨져’”, 2017.1.19.

II.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및 음주운전 현황

1.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

청소년기는 극심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겪으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과 갈등 속에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시기이므로, 충동과 갈등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주위환경과 심한 마찰을 보이고 경우에 따라 반항적이고 공격성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⁶⁾ 이렇듯 사회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유해물질인 주류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의 신경학적,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외부에 발현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험은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위험으로 귀착된다.

(1) 건강에 대한 위험성

1) 신체적 위험성

인간의 뇌는 유년기에 최대한 팽창을 하지만, 25세 전까지 계속 발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주류 섭취는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⁷⁾ 즉, 청소년기에 주류를 섭취하는 것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해마를 손상시켜 학습에 지장을 가져오고, 신경세포의 발달에 연계된 수초화 과정을 중단시켜 인지과정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과학계의 의견이다. 특히 알코올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흥분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줄이는 경험을 하게 된 청소년은 동일한 흥분을 얻기 위하여 주류를 반복 섭취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행동은 중년까지 계속되어 뇌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어⁸⁾ 만성 알코올 중독증의 원인이 된다.⁹⁾

6) 민원홍·Nguyen Thi Phuong Thao,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발달궤적에 대한 신체적 공격성의 영향: 친구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제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4, 287-288쪽; 김현수·김현실, “한국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한국신경정신의학회지』 제41권제3호, 한국신경정신의학회, 2002, 472-485쪽.

7) Melodee Hans, “Effects and Consequences of Underage Drinking”, *Juvenile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September 2012, p.2.

8)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에 대하여 알코올 중독 관련 요인을 조사한 한 연구 결과 알코올 중독증으로 추정되는 알코올 사용장애 음주군의 경우 주류를 처음 접한 시기로 10대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알코올 중독 요인분석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 2015.11, 9-10쪽.

9) Lindsay M. Squeglia, Joanna Jacobus and Susan F. Tapert, “The effect of alcohol use on human adolescent brain structures and systems”, *Handb Clin Neurol*, vol.125, 2014, pp. 501-

또한 청소년 음주는 위험한 성행위와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고되어 있다. 즉, 청소년기에 술을 마실 경우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게 되거나 도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게 되며, 우발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성관계에 참여하고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성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¹⁰⁾

2) 정서적 위험성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일탈을 감행하는 성향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감의 표현으로 금지되어 있는 음주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주류를 빈번히 섭취하는 행위는 자존감을 낮추게 하거나 우울증, 행동장애,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¹¹⁾ 이외에도 청소년 음주는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문제학생이라는 낙인을 찍게 하는 원인행동이며, 이로 인하여 음주 청소년은 소외감과 박탈감이 증대되어 자살에 나아가거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¹²⁾

(2) 사회적·경제적 위험성

청소년은 음주를 한 이후에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져 살인이나 신체적 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 방화,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자신에 대한 사상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신상,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¹³⁾ 2007년에 시행된 미국의 청소년 음주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7년 한해 동안 청소년 음주로 인하여 사회에서

510; Deborah S. Hasin, Marc A. Schuckit, Christopher S. Martin, Bridget F. Grant, Kathleen K. Bucholz, and John E. Helzer, "The Validity of DSM-IV Alcohol Dependence: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 27, No. 2, February 2003, p.245.

10) Melodee Hans, Id, p.1; Hingson, R., and Kenkel, D, Social, health,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underage drinking. In *Reducing Underage Drinking: A Collective Responsibility*, edited by R.J. Bonnie and M.E. O'Connell.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pp. 351-382.

11) Brown, S.A., and Tapert, S.F. Health consequences of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In *Reducing Underage Drinking: A Collective Responsibility*, edited by R.J. Bonnie and M.E. O'Connell.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pp. 383-401.

12) B.L. Halpern-Felsher and J.L. Cornell, "Preventing underage alcohol use: Where do we go from her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7, 2005,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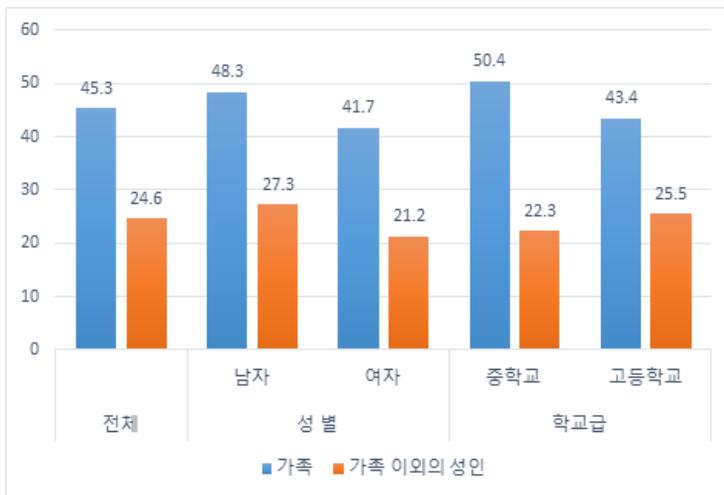
13) 알코올 자체가 교통사고, 폭력, 살인, 방화 강간 등 각종 범죄의 사고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범죄 분석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방화범죄자의 45.1%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음주로 인한 범죄 유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통권 151호, 2018. 12, 60쪽.

발생한 경제적 비용 - 예를 들어 가해청소년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일일수입의 상실, 정신적 위자료, 재산상 손실을 포함한 모든 비용 - 은 6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음주가 금지된 16-20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그 중 19%는 성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드러났는바,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⁴⁾ 또한 청소년 본인도 음주 중독까지 다다른 경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진료를 위하여 학교를 조퇴하거나 결석하게 되는 등 학업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학생 개인의 인생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¹⁵⁾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1)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 현황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음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의 33.5%가 생애 음주 경험이 있고, 이들 청소년들의 45.3%는 가족이, 24.6%는 가족



[그림 1] 성인의 권유, 강요 등에 따른 음주경험률(%)¹⁶⁾

14) Melodee Hans, Id, p.8.

15) 배정이·김영훈·황원주·Panuncio, Rosel L., “청소년 물질남용[음주, 흡연, 마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기반 전문가시스템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제2호, 정신간호학회, 2009. 6, 117쪽.

16) 여성가족부, 위 조사보고서, 33쪽 자료 재구성.

이외의 성인으로부터 음주를 권유, 강요 및 말리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권유 등으로 청소년의 생애 음주 경험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음주에 있어 관대한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서부터 청소년의 음주를 차단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¹⁷⁾

또한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하는 현재 음주율에 있어서도 2018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14.5%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 고등학생의 비율이 20.6%에 달하였다.¹⁸⁾

(2) 청소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청소년의 음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음주운전 인명사고 발생 건수는 19세 이하 283건, 그 중 사고로 인한 사망 18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2,46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¹⁹⁾ 실제 2018. 6. 17세 청소년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7. 9. 19세 청소년이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주취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인도를 지나던 72세의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도 있었다.²⁰⁾

Ⅲ.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와 판례의 태도

1. 현행법상 규정

(1) 청소년 음주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청소년유해약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17)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8. 12, 33면, 142-144쪽.

18)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018.12, 33쪽.

19) 허민숙,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NARS 현안분석」 vol. 33, 국회입법조사처, 2018, 1쪽.

20) 서울신문, ‘음주운전 인명사고’ 10대가 최고... 어려서부터 교육 필요해, 2019.1.19.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적시하고 있는바(제2조 제4호), 그 중 주세법의 "주류"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 정의되어 있다(주류법 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주류를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동조 제4항),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내지 제7조의3).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2)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상 제재

1) 일반적 규정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의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바(동법 제1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제44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하에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경우 종래 그 기준에 대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 부분을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를 통하여 낮추어 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관한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법 제 148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동조의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가중된 형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2) 청소년 음주운전 시 적용 규정 : 소년법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소년법 제2조) 소년법상의 절차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관할 역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어 이원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자의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소년법 제3조 제2항), 후자의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소년법 제48조).

따라서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사안의 경중 등 사건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할 경우 등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며, 이때 일반적 규정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대상자가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특칙 규정에 따라 성인법과 달리 처우될 수 있다.

(3) 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으로는 일반법인 민법보다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되기에 대부분 자동차보유자는 타인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소년이 절취운전 혹은 무단운전인 상황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을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이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¹⁾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경우 부모 등 차량의 소유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을 허락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음주운전까지 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청소년이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는 등의 행동이 개입되었을 사정이 있을 것인바, 그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차량의 소유자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²²⁾ 청소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에 충

2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사고 차에 대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사고 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차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지, 피용자 등이 사고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당시 소유자가 사고 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그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격을 가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청소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대부분 미성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청소년의 경우 경제능력이 통상 부재한 것이 현실이므로,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함이 수월해지므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한편(민법 제753조), 그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그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에게 그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그런데 만약 가해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존재할 경우 민법의 규정에 관한 문리적 해석을 관철한다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 민법 제755조와 같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는 그 청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존재할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민사상 전보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755조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²³⁾ 우리나라의 판례는 전자²⁴⁾와 후자²⁵⁾의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데, 현재의 판례의 경향은 후자의 견해로 이해되고 있다.²⁶⁾ 2004년과 2013년의 민법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민법 제755조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도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시도된 바 있다.²⁷⁾ 그러나 명문으로 그와 같은 규정이 민법에 도입되지 않

23) 정정일,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사법학』 제33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300-302쪽; 강봉석,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13권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63쪽.

2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74 판결.

2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26) 정상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영남법학』 제13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89쪽.

27) 안병화,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 제24권제1호,

는 한 현재로서는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여 감독자에게 별개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해석방안이라고 생각되며,²⁸⁾ 청소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 발생시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형사상 책임에 관한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 조항과 관련하여 청소년 음주운전으로 과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판단한 바 있다.²⁹⁾ 대법원은 동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2006.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인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사실 또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2) 민사상 책임에 관한 판례

하급심 판결로 청소년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으로는, 만 18세 3개월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청소년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 있다.³⁰⁾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甲이 부모의 주거지에서 함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02쪽.

28) 백경희·송승훈·박정수·강근호·조동선, “학교폭력의 범위 및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3권제3호(통권65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15쪽.

29)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당시 가해자는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에도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시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외박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甲의 연령, 품행 및 전력, 경제적 자립 여부, 부모와의 동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 乙, 피고 丙은 피고 甲의 부모로서 미성년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피고 甲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甲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그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甲의 부모인 피고 乙, 丙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IV. 외국 사례 검토 - 미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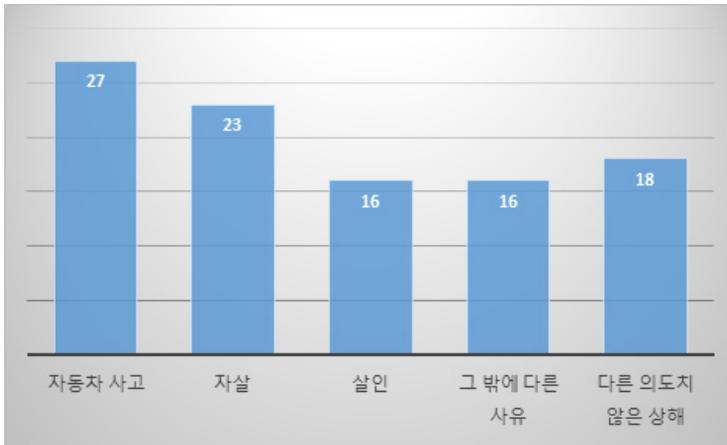
1. 규제 배경

미국에서 알코올은 해마다 88,000명의 사망을 야기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사망원인이다. 지난 20년간 성인의 폭음과 알코올로 인한 장애 비율은 크게 증가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알코올 사용의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2,4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4에 해당하는 것이 여성의 경우 한번에 4연속 또는 그 이상, 남성의 경우 5연속 또는 그 이상 마시는 것으로 정의되는 폭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알코올 소비에 관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음주는 감소하는 성과가 있긴 했으나 알코올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미국 젊은 층에서 담배나 마리화나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21세 미만인 사람들의 음주는 지난 20년 동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은 매년 미국에서 대략 4,300명의 젊은 층 죽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 지속적으로 건강 및 사회 문제로 부담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³¹⁾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4. 선고 2011가단 10707 판결.

31) 2018 Report to Congress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Underage Drinking, SAMHSA, p.2.

미성년 음주자에 대한 가장 큰 사망 위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인데,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 한 15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1,908명의 운전자 중, 24%가 혈중알코올 농도(BAC)가 0.01 또는 그 이상이었고, 4%는 BAC가 0.01에서 0.07 g/dL이었으며, 19%는 BAC가 0.08g/dL 또는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성년자 음주는 자동차 사고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자살이나 살인 등 12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4가지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³²⁾



[그림2] 2016년 미국 내 12~20세 사망 주요 원인[단위:%]³³⁾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대략 1/3에서 알코올(BAC 0.10g / dL 이상)이 주요 기여 요인이었고, 자살에서는 거의 1/4의 비율로 알코올이 기여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개 주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자살로 사망 한 사람 중 12%가 BAC > 0.08 g / dL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자살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자살로 인한 사망 중 9.1%의 자살 행위가 알코올 관련이며, 그 중 72%가 음주 또는 음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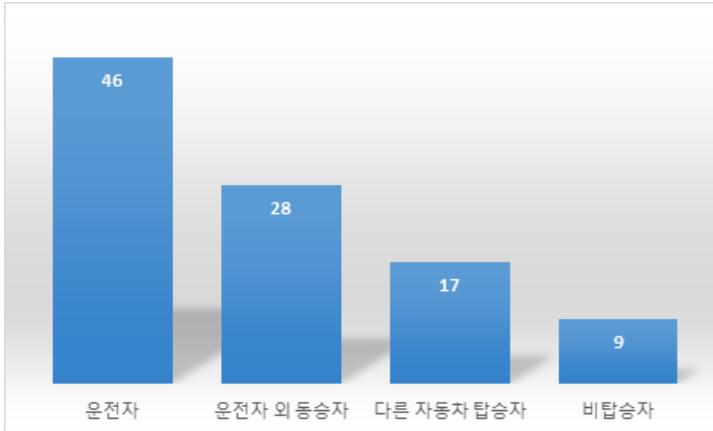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외의 다른 사람이 청소년 음주의 결과 재산상 손해, 의도하지 않은 상해, 폭행 그리고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데, 2016년 BAC

32) Id. at 12.

33) Id. at 12.

34) Id. at 12~13.

0.01 또는 그 이상인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 음주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967 명이 사망한 바 있다.



[그림3] BAC 0.01 이상 15~20세 운전자 관련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 분포[단위:%]³⁵⁾

2. 청소년 음주를 감소를 위한 제도 정비

(1)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최소 연령의 설정

미국에서는 1933년 금주법이 해제된 이래, 미성년자의 알코올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알코올을 통제할 권한이 주에 추정되었다. 1970년과 1976년 사이에 29개 주에서 최소음주가능연령(minimum legal drinking age : MLDA)이 21세에서 18세, 19세 또는 20세까지 낮아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투표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10대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최소 연령을 다르게 하고는 있지만 29개 주 중 24개 주에서 1976년과 1984년 사이에 MLDA를 올렸고, 일부에서는 21세 미만의 자가 소비 할 수 있는 알코올 종류에 대한 제한을 두었으며, 22개 주에서만 MLDA가 21로 설정되었다. 그 결과 미성년 운전자들이 주 경계를 넘어 다른 주로 이동하여 주류를 사고 음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의회는 1984년 최소음주연령법(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Act of 1984)을 제정하여 주들이 MLDA를 21세로 올리도록 유도

35) Id. at 15.

하였다. 그 결과 1987년까지 남은 모든 주들이 부모의 허락 등 몇 가지 예외에도 불구하고 주에서의 MLDA를 21세로 올리게 되었다. 주마다 다르지만 21세의 MLDA는 청소년의 교통사고를 현저하게 줄였고, 후속 연구에 따르면 음주를 줄이는 것이 특히 젊은 층의 사망률에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고, 청소년들의 우발적 상해, 과도한 음주 등과 같은 비치명적 상해 비율을 감소시켰다.³⁶⁾

(2) 청소년 음주와 운전 규제

미국의 경우 10대들에 대한 운전면허자격 체계는 10대운전자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운전을 제한하는 최소 감독 학습자 기간 또는 중간 면허 기간을 두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대한 제한과 9개 정도의 규제가 있다. 미성년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9개의 규정들은 음주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는데, 주류소유 금지, 주류 구매 금지, 측정 가능한 정도의 혈중알코올수치로 운전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무관용, 바텐더가 21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 책임 있는 음료서비스 법, 술집에 대한 법적 책임, 사고모임 주최자 책임법이 그것인데, 이 9가지 유형의 법적 규제는 총괄하여 연간 1,135건의 음주와 관련된 교통사고사망을 예방하고 21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산출된다.³⁷⁾

(3) STOP Act 제정

2006년 제정되어 2016년 재승인된 STOP(Sober Truth on Preventing) Understanding Drinking Act는 미성년자 음주를 줄이려는 국가의 노력, 특히 술 마시는 곳의 규제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코올은 고유한 제품이므로 미국 및 연방 정부에서 다른 제품과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 주 정부는 주류 판매 및 판매를 규제할 주요 권한을 가지며, 연방 정부는 이러한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는 청소년의 청소년 알코올 접근을 막고 미성년 음주를 줄이는 책임이 있다. 주정부 규정 및 알코올 음료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 운송 및 보관에 대한 라이선스는 ... 21 세 미만의 사람이 알코올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이 법의 전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36) Id. at 18.

37) Frances M. Harding et al., “Underage Drinking-A Review of Trends and Prevention Strategies”, *Prev Med* 2016 51(4S2), p.152.

이 법은 미국에서의 음주 문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방, 중재, 치료, 시행 및 연구에 대한 조정된 접근 방식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집중된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정부 활동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노력의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⁸⁾

3. 검토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음주는 음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결과에 따른 비용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미국의 사례도 바로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다수 있고, 주취감정을 주장하여 한정적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된 바도 있다.³⁹⁾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음주를 하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주고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성,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비단 미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뿐 아니라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청소년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나아가 성인이 된 후의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를 우리나라에 유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음주 가능한 연령대의 상향 조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각 부처 간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음주문제나 건강부분을 고려하면 소관부처는 더 많아질 수 있는 바, 각 부처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음주율 제고를 위한 노력 및 STOP Act의 시행을 통한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연대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외에 음주운전을 한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보호처분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8) 2017 Report to Congress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Underage Drinking, SAMHSA, p.120.

39) 이와 관련한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으로 개선되기는 하였다.

V.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음주를 사위의 방법으로 시도하려는 청소년 관련 문제점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에 관한 현행법제하에서는 주류의 경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의 판매나 제공 등을 금하고 있고, 주류 상품에 주류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판매자 등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상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청소년 음주운전에 관한 민사책임에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절취 또는 습득을 하거나 위·변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판매자 등을 속여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듯 청소년 스스로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상 제재가 가능할 것이지만, 이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는 현행법상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에 제20대 국회의원인 김영호 의원 등 13인이 2018. 12. 28. 의안번호 2017874로 제안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 제 63조 제2항에 신설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2. 청소년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제재의 필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을 청소년으로 보아 이들은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공받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음주가 금지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더라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미국의 실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가 허용되는 연령제한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은 각국의 사회 실정, 법적 감수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 음주운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음주가 허용되는 연령을 보다 늦추고, 혈중알콜농도

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⁴⁰⁾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의 A군이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수입 자동차를 충돌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본인 역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콜농도는 0.136%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는바,⁴¹⁾ 이러한 경우는 현행법상 운전면허와 음주가 금지되는 연령대의 청소년이 실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행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은 만 19세에 해당하여 음주가 가능한 연령이기는 하나, 입학하자마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이나 멤버쉽트레이닝에서부터 음주문화로 혹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행사가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음주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신입생들에 대하여 선배가 후배에 대하여 군기를 잡는다거나 서열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미에서 다량의 음주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강압적 상황에서 폭음을 하는 신입생들 중 일부는 음주로 인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⁴²⁾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은 취업을 통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인간관계나 충동성 등을 이유로 음주를 하면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깊어져 가기도 한다.⁴³⁾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는 사회인의 그것보다 높으며, 이는 대학생이 지니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획이 없이 빠른 결정을 하는 특징인 충동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실사례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⁴⁴⁾ 실제 대학생의 음주 실태에 대하여 전국 63개 대학의 재학생 4,016명을 상대로 행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상 대학생의 71.2%가 알코올중독으로 추정되는 폭음자이며, 여학생 수시폭음자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많고, 이들은 학업문제나 폭력,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⁵⁾⁴⁶⁾

40) 김성호, 음주운전 단속기준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28-29쪽.

41)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교고생, 포르쉐와 '쿵' ... 수리비만 1억 5천만원, 2019.11.22.

42) 인사이트, 죽음의 새내기MT, 10년간 음주사고로 대학생 22명이 숨졌다, 2018.4.6.

43) 문제우, "대학생의 음주가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제40권제1호, 대한보건협회, 2014, 76-77쪽.

44) 신지원·양난미, "대학생의 충동성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 음주동기와 예방행동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5권제5호, 한국상담학회, 2014, 1832-1833쪽.

45) 제갈 정,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개선방안", 제36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자료집, 대한보건협회, 2011, 42쪽.

46) 미국의 경우 음주와 폭음 비율은 18세에서 20세까지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미성년 청소년층에서 더

위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를 고려한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훼손을 방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음주 후 운전으로 연결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음주가 가능한 연령대를 상향조정하여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인 대학졸업년도나 그 이후로 설정하거나 청소년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혈중알콜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높은 양상을 보이는데, 대학에 다니지 않는 동년배보다 대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각 63.2%와 59.2%)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음주와 관련하여서는 성폭력과 캠퍼스 내 다른 폭력범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2018 Report to Congress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Underage Drinking, SAMHSA, p5.)

참고문헌

I. 국내문헌

[단행본]

- 김성호, 음주운전 단속기준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8.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8.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8. 12.

[논문]

- 강봉석,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13권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김현수·김현실, “한국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한국신경정신의학회지」 제41권제3호, 한국신경정신의학회지, 2002.
 문재우, “대학생의 음주가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제40권제1호, 대한보건협회, 2014.
 민원홍·Nguyen Thi Phuong Thao,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발달궤적에 대한 신체적 공격성의 영향: 친구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제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4.
 배정아·김영훈·황원주·Panuncio, Rosel L., “청소년 물질남용[음주, 흡연, 마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기반 전문가시스템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제2호, 정신간호학회, 2009.
 백경희·송승훈·박정수·강근호·조동선, “학교폭력의 범위 및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3권제3호(통권65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신지원·양남미, “대학생의 충동성과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 음주동기와 예방행동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5권제5호, 한국상담학회, 2014.
 안병화,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 제24권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이경상·이순래·김지연, “청소년 음주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소년보호연구 제25권,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정상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영남법학」 제13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정정일,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사법학」 제33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정진욱, “알코올 중독 요인분석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 2015.
 제갈 정,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개선방안”, 제36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자료집, 대한보건협회, 2011.
 허민숙,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NARS 현안분석」 vol. 33, 국회입법조사처, 2018.

II. 외국문헌

[단행본]

- 2017 Report to Congress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Underage Drinking, SAMHSA(2017).
- 2018 Report to Congress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Underage Drinking, SAMHSA(2018).

[논문]

- B.L. Halpern-Felsher and J.L. Cornell, "Preventing underage alcohol use: Where do we go from her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7, 2005.
- Brown, S.A., and Tapert, S.F. Health consequences of adolescent alcohol involvement. In *Reducing Underage Drinking: A Collective Responsibility*, edited by R.J. Bonnie and M.E. O'Connell.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 Deborah S. Hasin, Marc A. Schuckit, Christopher S. Martin, Bridget F. Grant, Kathleen K. Bucholz, and John E. Helzer, "The Validity of DSM-IV Alcohol Dependence: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 27, No. 2, February 2003.
- Hingson, R., and Kenkel, D, Social, health,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underage drinking. In *Reducing Underage Drinking: A Collective Responsibility*, edited by R.J. Bonnie and M.E. O'Connell.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 Lindsay M. Squeglia, Joanna Jacobus and Susan F. Tapert, "The effect of alcohol use on human adolescent brain structures and systems", *Handb Clin Neurol*, vol.125, 2014.
- Lindsay M. Squeglia, Joanna Jacobus and Susan F. Tapert, "The effect of alcohol use on human adolescent brain structures and systems", *Handb Clin Neurol*, vol.125, 2014.
- Melodee Hans, "Effects and Consequences of Underage Drinking", *Juvenile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September 2012.

논문 투고일: 2019.10.30

심사 완료일: 2019.11.29

게재 확정일: 2019.12.05

[Abstract]

Current Legislation on Juvenile Drunk Driving in South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Kyoung-Hee Baek*, Young-Joo Shim**

Alcohol consumption in adolescence, a period of social and emotional vulnerabilities, affects the neurological,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adolescents. Moreover, as aggression is expressed externally, a high possibility of harming others exists, eventually leading to social and economic risks. Another problem is unlicensed drunk driving or juveniles driving after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that are classified as harmful drugs for youth. These drunk-driving incidents occur frequently, causing much damage.

Current South Korean legislation, specificall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defines a juvenile as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lso prohibits selling alcoholic beverages that are classified as harmful drugs to juveniles. The Road Traffic Act prohibits driving while intoxicated, and a person younger than 18 years of age cannot legally obtain a driver's license. If a juvenile causes harm to the body or property of another person whil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such an act will not only requir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unlawful act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ut it will also increase the liability for the juvenile's supervis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the United States, the age at which a driver can obtain a license is lower than Korea, but many states prohibit drinking alcohol until 21 years of age and are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those who are prohibited from drinking alcohol and cause accidents because they drove drunk. The juvenile drunk driving system in the U.S. should be reviewe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setting a minimum age requirement for drinking alcohol, the sanctions that can be imposed on juvenile offenders who drink alcohol, and how to impose liability on juvenile drunk driving offenders.

Key Words: Adolescence, Drunk driving, Youth Protection Act, Road Traffic Act, Legal liability

* Professor, Inha University, First Author

** Lecturer, Inh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